

#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미화 교육청소년과장)

### 가. 개정사유

-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, 포항시 지역돌봄협의체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내용을 일부개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(안 제2조)
- 비용의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: 종전 제6조에서 이동
- 지역돌봄협의체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운영 방식 변경(안 제9조~제10조, 제12조)
-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11조)
-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)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른 띄어쓰기 및 맞춤법 정비 등

## 다. 관련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, 제21조의2 (시설의 위탁)
-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정희)

- 본 조례안은 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, ‘포항시 지역돌봄협의체’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### 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돌봄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, 비용 징수 및 지역돌봄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또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함께 보완하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.
- 검토 결과,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